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보수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월 9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136호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보수 규정 일부 개정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보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정액급식비) ①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서 정하는 금액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인 자, 직제와 정원의 개편·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있는 자는 지급대상자에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